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이하 “음악영상물등”이라 함)의 제작·배급 시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등록 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도입하되, 방송프로그램 동일 내용 등 일정 대상은 등급분류 예외로 규정함(안 제17조).
- 자체등급분류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등록, 등급 표시, 영상물등급위원회 통보, 등급분류책임자 지정 및 교육 이수, 자료요청 협조 등의 준수사항을 신설함(안 제17조의2 및 제25조제2항).
- 부적절한 등급에 대한 조정 명령 및 등급분류 취소, 등급 미분류·위반물에 대한 유통 금지 등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함(안 제17조의3, 제34조제3항 및 제36조제1항).

II. 검토의견

1. 금지행위 규정의 구조 명확화(안 제17조의3제3항 등)

개정안은 제17조의3제3항제1호에서 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와 관련된 금지행위를 규정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경우와 등급분류 내용 또는 등급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를 하나의 호에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처럼 서로 다른 위반 대상(등급 미분류 영상물 및 내용·등급 임의 변경 영상물)과 위반 행위(제작, 공급 등)를 하나의 문장에 혼재하여 규정할 경우 법문의 해석이 모호해지고 가독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금지행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위반 대상의 유형을 기준으로 해당 조문을 2개 호로 분리하여 정비하고, 이에 맞추어 기존에 제17조의3제3항제1호를 인용하고 있던 조문들도 함께 정비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

개 정 안	수정의견
제17조의3(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 사후 관리 등) ①·② (생략)	제17조의3(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 사후 관리 등) ①·② (생략)
③ 누구든지 음악영상물등의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 -----.
1.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한 내용 또는 등급을 변경한 음악영상물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경우 <u><신설></u>	1. 제17조제1항에 따른 <u>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음악영상물등</u> 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2. 제17조제3항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경우	2. 제17조제1항에 따른 <u>등급분류를 받은 내용 또는 등급을 변경한 음악영상물등</u> 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제29조(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① ~ ⑥ (생략)	3. 제17조제3항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하는 행위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7조의3제3	제29조(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7조의3제3

2. 등급 표시 의무 단위 구체화(안 제25조제2항)

안 제25조제2항은 음악영상물등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에게 제17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등급을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다만, 등급을 표시해야 하는 최소한의 단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 적용 및 해석상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바, 유사 입법례¹⁾를 참고하여 “해당 음악영상물등마다” 등급을 표시하도록 의무 단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

개 정 안	수정의견
제25조(표시의무) ① (생 략) ② 음악영상물등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서비스 제공행위를 포함한다)하는 <u>자는</u> 제17조제1항에 따라 분류된 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25조(표시의무) ① (생 략) ② ----- ----- ----- <u>자는</u> <u>해당</u> <u>음악영상물등마다</u> ----- ----- -----.

3. 권한 위탁에 따른 공무원 의제 조항 정비(안 제33조)

안 제32조제2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의 권한을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추가하고 있는데, 안 제33조는 제32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종사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수뢰죄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5조(표시의무) ① 영리의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마다 제작·수입 또는 복제한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제50조제1항 또는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분류된 등급, 내용정보,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3조(표시의무)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마다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등)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면서 그 대상에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명시하지 아니하여 처벌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권한의 위탁 대상과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대상을 일치시켜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

현 행	개 정 안	수정의견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 략) ②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관련 협회 또는 단체</u> 에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 략) ② ----- ----- ----- ----- <u>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u> <u>관련 협회·단체</u> ----- -----.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제3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u>관련 협회 또는 단체</u> 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현행과 같음)	제3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 ----- ----- <u>영상물등급위원회 또는 관련 협회·단체</u> ----- ----- ----- -----.

4. 부칙(시행일) 수정

개정안은 부칙에서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등급분류 제도 도입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등 원활한 법 시행 준비를 위하여 시행일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부칙(시행일)을 수정함.

부칙(안)	수정의견
이 법은 공포 후 <u>6개월</u>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u>1년</u> ----- -----.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법문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음(주서본 참조).

(전문위원 이 세 진)